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9. 3 선고 2021가단29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3.

판 결 선 고 2021. 9. 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(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4. 7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흥시장 2020. 4. 7. 접수 제009735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129 약정금 판결에 기하여, “(1)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6. 25.부터 2018. 11. 3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(2)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6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”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.

○ 2013. 3. 22. E1)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. 4. 7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(취득일자: 2020. 3. 25., 이전등록구분: 당사자거래이전)이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갑 1, 3호증의 각 기재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D은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인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, D이 원고로부터 그 리스료를 대납하였으므로,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리스계약서 등은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 동시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3. 판단

우선, 을 2호증의 1, 2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2014. 11. 20.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. 4. 7.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리스 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라거나 리스료를 D이 대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(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,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3호증에 의하면 리스료를 피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).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나머지 주장이나 청구취지의 당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수희

[별 지]

자동차의 표시:

1. 자동차등록번호 :

1. 제원관리번호: 024-2-00125-0004-1312

1. 차 명 :

1. 최초 등록 일 : 2013 -03 - 22

1. 년 식 : 2013

1. 원 동 기 형 식 : CTU

1. 용도 : 자 가 용

1. 제작년월일 : 2013-03-19

1. 차 대 번 호 :

1. 최 종 소 유 자 : (구명)

1. 주민번호

1. 사 용 본 거 지 : 경기도 시흥시

호

이상 끝.

1) 원고와 피고 모두 자동차등록증을 비실명화된 것으로 제출하여 위 기재한 것 이상으로 정확한
명의를 확인할 수 없다.